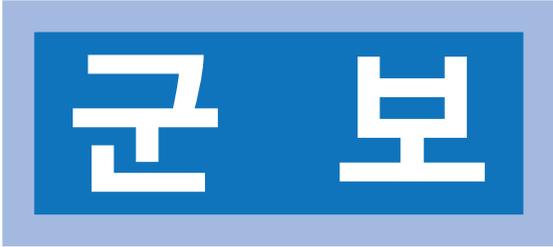




장수군
JANGSU COUNTY

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정기 2024. 2. 1.(목)

입법예고

장수군 공고 제2024-110호	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..... 1
장수군 공고 제2024-111호	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..... 8

공 고

장수군 공고 제2024-40호	장수군 공인 등록(폐기) 공고..... 14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장 수 군 (편집 기획조정실 ☎ 063-350-2066)

장수군 공고 제 2024-110호

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
장 수 군 수

1. 개정이유

호국보훈수당 대상자의 2024년도 도비보조금이 차등지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○ 전북특별자치도 도비 지급액

- 참전유공자(6.25, 월남참전) : 4만원
- 그 외 보훈대상자 : 2만원

2. 주요내용

가. 호국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1만원(도비+군비)에서 9만원으로 군비 지급액만 명시(안 제4조제1항)

나. 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호국보훈수당 추가지급 반영(안 제4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(참조 : 주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, 장수군청 주민복지과
(전화 : 063-350-2071, 팩스 : 063-350-5703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4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담당자
(전화 063-350-207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 입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

나. 「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[붙임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

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반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장수군 조례 제 호

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1만원”을 “9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장수군청 주민복지실”을 “장수군청 주민복지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1항, 제2항 지급액은 2024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2호서식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주 소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전화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40%;"></td> </tr> <tr> <td>생년월일</td> <td></td> <td>보훈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계좌번호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 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년 월 일</p> <p>신청인(성 명) : (인)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은 호국보훈수당지원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○ 만약 중복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호국보훈수당 업무 담당자(☎350-20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	주 소				성 명		전화번호		생년월일		보훈번호		계좌번호				<p>[별지 제2호서식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주 소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전화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40%;"></td> </tr> <tr> <td>생년월일</td> <td></td> <td>보훈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계좌번호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 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년 월 일</p> <p>신청인(성 명) : (인)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은 호국보훈수당지원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○ 만약 중복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호국보훈수당 업무 담당자(☎350-20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	주 소				성 명		전화번호		생년월일		보훈번호		계좌번호			
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 명	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년월일		보훈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좌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 명	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년월일		보훈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좌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발췌서

「국가보훈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(禮遇)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으로 기르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장수군 공고 제 2024-111호

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
장 수 군 수

1. 개정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을 인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2조제4호)
 -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
- 나.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보상금 인상(안 제6조제1호)
 -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(참조 : 주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, 장수군청 주민복지과
(전화 : 063-350-2071, 팩스 : 063-350-5703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4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담당자(전화 063-350-207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 임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

나. 「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[붙임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

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반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장수군 조례 제 호

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2만원”을 “3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“보훈단체”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<u>국가보훈처장</u> 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. 5. (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 <u>국가보훈부장관</u> ----- -----. 5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석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 : <u>2만원</u> 2.·3. (생략)	제6조(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 <u>3만원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발췌서

「국가보훈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(禮遇)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으로 기르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장수군 공고 제2024-40호

장수군 공인 등록(폐기) 공고

장수군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등록(폐기)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.

장 수 군 수

- 1. 폐기 사유
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기
- 2. 공인사용 종료일자 : 2024. 1. 17.
- 3. 등록 공인명 및 인영

구 분	공 인 명	규격 및 서체	인 영
폐기	전라북도지사의인 「장수군수전용」	한글전서체 2.6cm정방형	
폐기	전라북도 장수군 분임재무관	한글전서체 2.0cm정방형	
폐기	양곡관리특별회계 전라북도 장수군 대리양곡출납공무원인	한글전서체 1.8cm정방형	
폐기	양곡관리특별회계 전라북도 장수군 양곡출납공무원인	한글전서체 1.8cm정방형	

군보발행안내

◎ 군보 발행 안내

- 군보는 매월 1일,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. (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)
 - ※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
-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◎ 군보계재 의뢰 안내

- 근거법규 :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(계재절차)
- 원고 접수 마감 : 매월 10일, 25일
- 군보계재 의뢰 방법 : 계재의뢰 공문(시행문) 1부 송부